

(사)한국조경협회 선거관리규정

이사회 의결 2015.01.28
개 정 2018.05.2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이하 “회장 등”이라 한다) 각 1인의 선출 및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회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과 차기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회장이 재선을 위하여 출마시에는 명예회장이 이를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2개월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홍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 연륜과 덕망이 높은 자를 협회 회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기획홍보위원장이 겸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선거일정 및 입후보 등록 공고
2. 입후보자의 자격심의 및 명세 공고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4. 참관인 신청 및 등록
5.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및 시행
6.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등의 선출에 관한 승인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 3 장 피선거권과 당선자 결정

제6조(입후보 자격)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 1회 또는 상임이사 3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1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으로 한다.
3.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이사 1회 이상 역임한 정회원 중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 한다.

제7조(입후보 절차)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장 등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장 등 입후보자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모든 입후보자의 명세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견발표)

1. 회장 등 입후보자는 협회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그리고 회장 등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구두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2. 소견발표의 분량, 회수,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투표 및 당선자 결정)

1. 선거권을 가진 임원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 나와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투표방식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당선자는 투표결과를 합산하여 유효투표 중 최대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일 후보인 경우 표결에 부치지 않고 출석선거권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보칙

제10조(공명선거 의무 등)

1. 투표권자 및 입후보자는 본인 또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아니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나 약속을 하는 행위
 - 2)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임의로 비방하는 행위
 -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행위
2.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제지,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여부, 시정조치의 종류와 내용 및 공표여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개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